

의안번호	2206972
의 퇴 인	송재봉 의원
회 답 일	2025. 1. 13.
추 계 번호	24E646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첨단산업기업의 수도권 밖 사업장에 취업하는
첨단산업인재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16조의2 신설 (첨단산업인재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)	○ 첨단산업기업의 수도권 밖 사업장에 취업한 첨단산업인재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 - 대상: 첨단산업기업의 수도권 밖 사업장에 취업한 첨단산업인재* *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- 내용: 취업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70% 세액 감면 (한도: 과세기간별 15만원)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6조의2 신설 (첨단산업인재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첨단산업인재¹⁾가 첨단산업²⁾기업의 수도권 밖 사업장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5년간 개인지방소득세의 70%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감소가 예상됨

-
- 1)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·기술·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 - 「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」(시행 2025.1.17.) 제2조 제2호
- 2)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·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, 파급효과,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 - 「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」(시행 2025.1.17.) 제2조 제1호
- 가.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
- 나. 「인적자원개발 기본법」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첨단분야
- 다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

-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첨단산업기업의 수도권 밖 사업장에 취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인재 및 해당 인원의 소득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지방소득세 규모 등을 추정해야 하지만, 구체적인 대상자 및 소득 규모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개정안은 감면대상이 되는 첨단산업기업 및 첨단산업인재의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, 관련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않아 감면 대상자와 대상자의 소득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